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7. 4.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7. 4

다. 상 정 일 자 : 제94회 제1차 정례회 사하구의회

제3차 총무위원회(2001. 7.14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장일용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, 민원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서에 명시토록 함
-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“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정이 50%이상 건축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”도 포함하도록 함
- 구에서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의 매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
- 농경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
-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유치에 대하여는 구유지의 대부 및 사용요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
- 구유지 내 2층 이상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출

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
- 공유재산에 대한 전세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상재산, 전세금산정, 예치, 반환 등 세부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함
- 사용료, 대부료, 변상금 등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을 도모함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
-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본 조례는 2000. 10.20일자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

구에서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의 매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을 우리 구 관내에 신축할 때 구유지 대부 및 사용료를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전세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, 전세금산정, 예치, 반환 등 세부 처리절차의 규정을 신설하였고

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